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-87호

2023년 부산지방우정청 우정9급(계리)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필기시험 일시·장소·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2023년도 우정9급(계리)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필기시험 일시 · 장소 ·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1일

부산지방우정청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: 18명

모집단위	합격인원	합격자 응시번호			
남부산우체국	6	021002	021003	021004	021006
		021007	021008		
부산진우체국	4	022001	022003	022004	022005
울산우체국	2	023001	023002		
남울산우체국	3	024001	024002	024003	
창원우체국	3	025001	025002	025003	

2. 필기시험 일시 : 2023. 6. 3.(토) 10:00~11:00(60분)

○ 입실시간 : 09:20까지 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
※ 필기시험 종료 후 11:20 퇴실 (20분 대기)

3. 필기시험 장소 : 여명중학교

○ 시험장 주소 :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52번길 9(여명중학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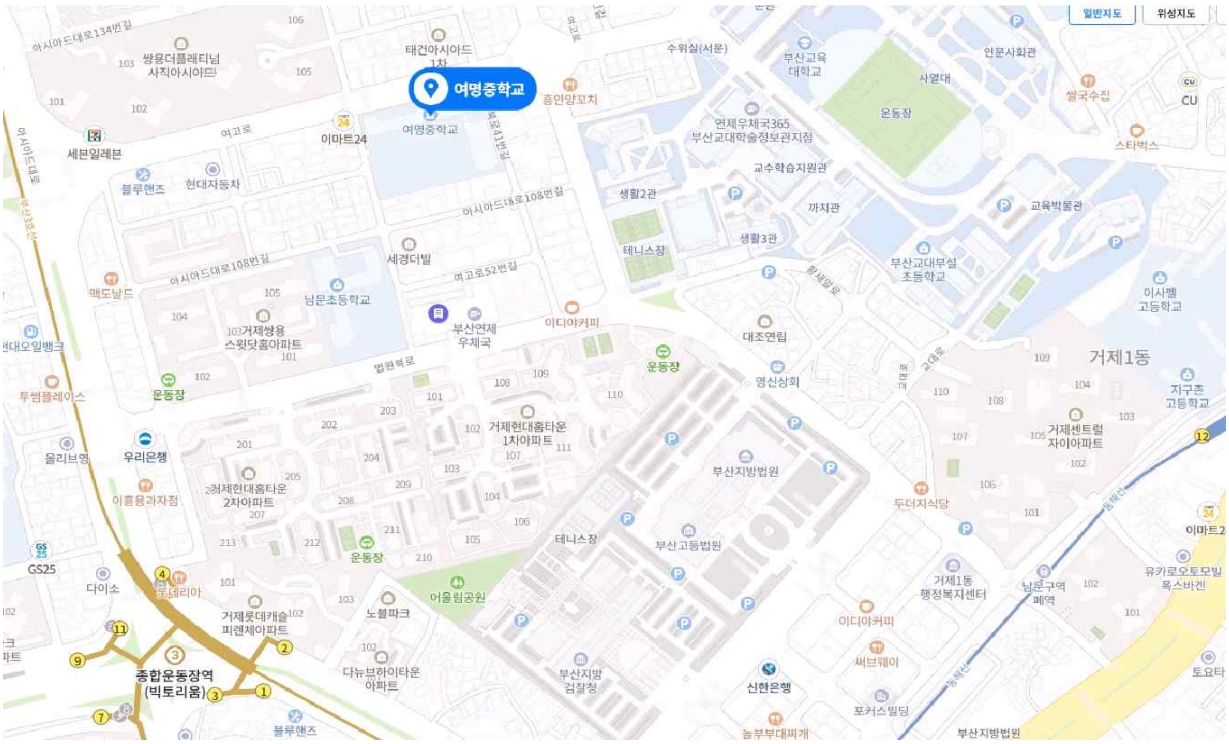

*** 시험장 위치, 교통편, 이동 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***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니,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**

4. 응시자 준수사항

【 일반사항 】

가. 시험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
※ 손 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[코로나 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](붙임 1)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**(출입구 관리)**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, 수험생, 시험감독관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(비접촉식 체온계) 실시

-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의심여지(발열 37.5℃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)가 있는 수험생은 예비시험실에서 분리 응시
- 시험실의 출입문·창문 등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를 할 예정이므로 각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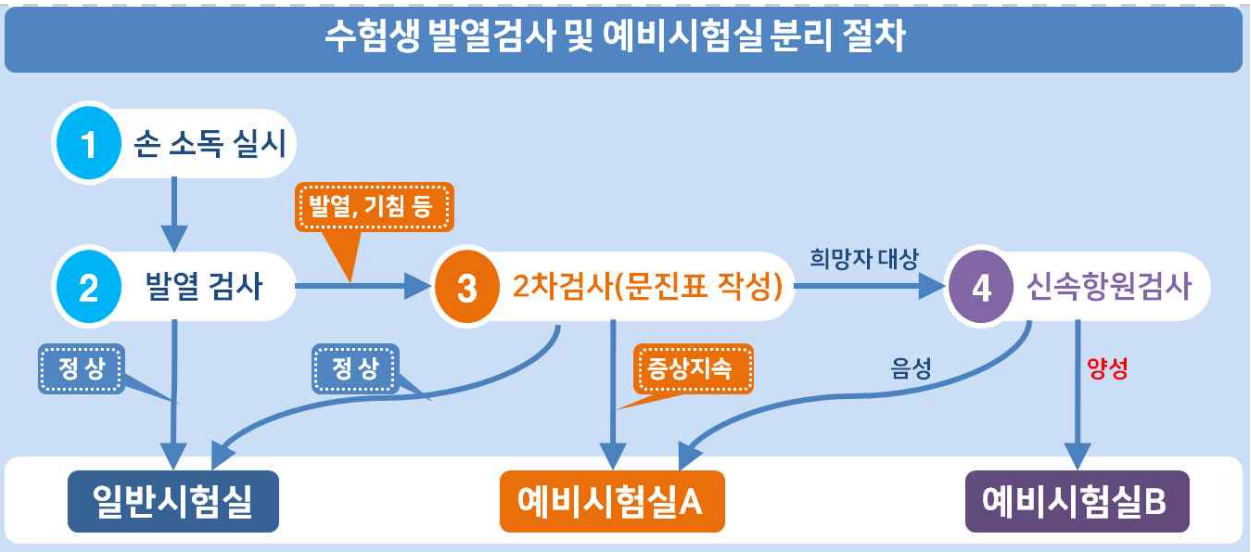

다. 시험 전일까지 **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※ 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

라.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.(차량탑승 응시자는 정문 하차 후 개별 출입)

마. **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**할 수 있으며, **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
- 격리자등*은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,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* 입원치료,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

※ 확진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방법은 【8.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】 참고

바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)을 **소지해야** 합니다.

※ **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 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**입니다.

※ 응시표는 우편으로 개별 송부

사.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,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(득점 불인정 등)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아. 시험시간 중 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이어폰, 스마트밴드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디지털 카메라, MP3 플레이어, DMB 플레이어 등)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

자.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,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,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
차. **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**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**자제**하여 주시고, **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**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카.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**에게 있습니다.

-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,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타. **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**, 배부된 **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파.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《 답안지 기재 및 표기 》

가. 득점은 OCR스캐너 판독기 결과에 따라 산출하며,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「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」(**사인펜에 "컴퓨터용"이라고 표시**)을 사용하여 반드시 〈보기〉 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〈보기〉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

※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

나.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, 문제 누락·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라.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**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**로 표기**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며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.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-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▮ ▮ ▮ ▮ ▮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《 부정행위 등 금지 》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7호 위반행위

■ **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,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**

○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○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○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○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○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○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**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**

○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○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○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○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-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

다. 특히 **시험 종료 후에**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 **무효 처분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(기재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 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

○ 필기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정답가안 공개 : 2023. 6. 3.(토) 17:00
-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 : 2023. 6. 3.(토) 17:00 ~ 6. 7.(수) 18:00
- 최종정답 공개 : 2023. 6. 14.(수) 18:00

※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/bs)

6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

○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/bs)에 게시합니다.

- 합격자 발표일 : 2023. 7. 11.(화)

7. 향후 시험 일정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2023. 7. 11.(화)

나. 면접시험일 : 2023. 7. 21.(금)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3. 8. 3.(목)

라. 시험관련 문의처 :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채용담당(☎ 051-559-3235)

8.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

가.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시험응시 권리 보장과 응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시험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.

- 시험일 현재(6.3.(토))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응시자는 일반시험장이 아닌 **방역조치된 별도시험장**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.
- 해당 응시자는 반드시 지방우정청으로 **자진신고하여**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코로나19 격리해제, 완치된 응시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합니다.

나. 시험응시 절차: ① 신고 → ② 응시대상 확인 → ③ 시험장 이동 → ④ 시험응시

① (응시자 신고) 확진으로 판정을 받는 즉시 해당 지방우정청에 알림

- 확진으로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즉시 각 지방우정청에 유선으로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, 시험 전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 전일 18:00까지 신고하여야 함

※ 자진신고 등록방법: 해당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담당에게 유선 신고(응시번호, 성명, 격리시작일 및 종료일, 휴대폰번호) / 격리통지서 사본 팩스(또는 사진문자, 메일 등) 송부

우정청	전화	팩스	e-mail
부산지방우정청	051)559-3235	0505-005-1457	bottlecrane@korea.kr

② (응시대상 확인)

- 재택치료자: 응시자의 자진신고(시험응시 신청)사항 확인 후 시험응시 절차 안내
- 입원·입소 치료자: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방우정청 제출, 우정청은 시험응시 절차 안내

③ (시험장 이동) 개인차량,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지정 시험장으로 이동 (대중교통 이용 금지) ※ 별도시험장 개방시간: 08:20

④ (시험응시) 별도시험장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 입실 및 응시

※ 개인별 지정 별도시험장 및 세부 응시절차는 원서접수 시 등록한 응시자의 전화번호로 개별 안내 예정

다. 기타 유의사항

- 확진 응시자의 시험장 배정은 확진 규모, 확진 일자, 별도시험장 수용 인원 등을 감안하여 배정할 예정이며, 필요한 경우 처방받은 먹는 치료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확진 응시자가 별도시험장으로 이동 시에는 아래의 「코로나19 격리자 시험 응시 유의사항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코로나19 격리자 시험응시 유의사항

■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며, 개인차량·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.

■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(예방접종 완료자)만 동행합니다.

-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(운전자와 대각선)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.
-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,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.

■ 자가격리 장소(집)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를 착용하고,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,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.

■ 이동 중 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시험장으로 이동합니다.

■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 주세요.

■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,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.

■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철저히 합니다.

■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.

※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9. 장애인 등 응사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(4.12.까지 신청)

가. 신청 대상

○ 2023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**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**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- **시각·지체·뇌병변**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○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
나. 신청 절차

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	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, 본인의 해당 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
⇩	
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	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기재
⇩	
구비서류 제출	본인이 신청하는 편의신청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원본 일체를 관할 지방우정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○ **제출기한: 2023. 4. 11.(화) ~ 4. 12.(수)** **※ 제출 마감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** **[서류 제출처] 관할지역별 해당 지방우정청(붙임)으로 송부** **※ 하지지체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팩스로 송부 가능**

다. 편의지원 관련 유의사항

1) **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**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 여부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(정도)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**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**)

2)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 병원)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(2021. 3. 16. 이후 발급)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**하게 인정됩니다.

※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
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・약국 찾기]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전문의 면허번호,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야 함)

3) 의사진단서에는 **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**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
※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에 예시된 각 **장애유형별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(밑줄 참조)을 누락됨 없이 진단서에 확인** 받으시기 바라며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**의사진단서에 따른 편의를 제공**합니다.

4) **장애인 응시자**는 별도의 편의제공 신청 없이 **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**합니다.

5) 의문사항 발생 시 **반드시 사전에 붙임의 해당 서류 제출처로 문의하신 후 처리**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안내 등

▣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미만인 자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 신청의 경우만 제출(**소견서 불인정**) ※ **제출기한**: 2023. 4. 12.(수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 ① 두 눈의 교정시력(좌, 우 각각 명시)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)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.1, 우0.2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(A4 크기)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 ▶ **시험시간 연장(1.2배): 60분 → 72분**

▣ 시각장애인 중 기타 시각장애인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**제출기한**: 2023. 4. 12.(수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舊 1~3급) · 상이등급(1~3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 신청의 경우만 제출(소견서 불인정) ※ **제출기한**: 2023. 4. 12.(수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 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*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 시 지체장애로 기재된 자 동일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)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손, 목,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 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 ▶ **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** ▶ **시험시간 연장(1.2배): 60분 → 72분** ▶ **대필지원** ▶ **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**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舊 4~6급) · 상이등급(4~7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**제출기한**: 2023. 4. 12.(수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舊 1~3급) · 상이등급(1~3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(**소견서 불인정**) ※ **제출기한**: 2023. 4. 12.(수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 ① 상지 지체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) 상기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 ▶ **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** ▶ **시험시간 연장(1.2배): 60분 → 72분** ▶ **대필지원** ▶ **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**

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舊 4~6급) · 상이등급(4~7급)
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**제출기한**: 2023. 4. 12.(수) **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 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 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

▣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, 임신부 등

지원요건	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, 임신부
구비서류	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 ▣ 장애인증명서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※ 제출기한: 2023. 4. 12.(수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≪임신부・과민성 대장(방광) 증후군≫ ▣ 의사 소견서 1부 ※ 제출기한: 2023. 4. 12.(수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※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ex) 상기인은 임신( )주, 필기시험 예정일(2023. 6. 3.)을 전・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,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	▶ 하지 지체장애인: 별도(저층)시험장(실)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▶ 임신부・과민성 대장(방광)증후군 :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,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▶ 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

【관할 지방우정청 주소 및 연락처】

지 역	우정청명	주소	전화/팩스
부산・울산・경남	**부산지방우정청**	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(거제동 1473)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㉾ 47502	051)559-3235 0505-005-1457

붙임1	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 수칙

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

【상 시】

▼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[코 · 입 노출 금지]을 권고드립니다.
※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응시자는 마스크(KF94) 의무착용

▼ 시험장 안 · 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대기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는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
【시험 전】

▼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마스크 착용 시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.

▼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시험 중에는 시험감독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【시험 중】

▼ 시험 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 마스크 착용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
【종료 이후】

▼ 퇴실 시 응시자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이오니, 응시자들은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질서 있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마시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[1339, 지역번호+120]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격리자등은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외출 전 주의사항 숙지 및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사실(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)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.

* 격리자: 입원치료,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